

경운대학교 군사학연구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규정에 의거 군사학의 체계화 및 과학화와 국내 민간부문에서의 연구 활성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한 군사 특성화 대학으로의 육성 발전을 위해 경운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및 향토지역 부대들과 군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학군 협력을 통해 군사학 연구분야(군사제도, 무기 및 장비획득, 교육훈련), 군 지원분야(군기, 사기·리더쉽·충원 및 전역·군대심리 등 인사지원과 국방조달관리·무기체계·자원관리 등 군수지원), 군사학 운용분야(전쟁사·정보·전략·작전술·전술)과 기초 군사분야(전쟁사상·전쟁철학), 기타 군사분야(민군관계·군대윤리·국방경제 등)를 연구하여 국내 민간 분야에서의 군사학 발전선도 및 한국군 국방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학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경운대학교 부설 군사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육군본부에서 설정한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 및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발전 활동을 시행한다.
 - 가. 국가안보문제: 국력요소, 대외관계, 민군관계, 정치군사문제, 국가발전과 군의 역할
 - 나. 군사역량 배양 및 활용: 군사력 구성과 편성, 군사력확보 및 준비와 활용, 작전 및 전쟁계획과 동원계획 준비검토, 지휘통제 발전
 - 다. 군사교리 및 전략 전술: 우방 및 적성국 정보, 적 위협, 자료처리 방법
 - 라. 군사제도: 국방정책 결정과정과 제도, 군사과학기술 영향
 - 마. 군사관리: 국방정책상 관리기술, 자원·무기·조직·인사관리, 인력관리
 - 바. 지휘통솔 : 개인 및 집단 행위 관리 및 지도, 민간관리, 조직관리 기술, 군대윤리 등
 - 사. 연구분석 방법 : 군사연구와 평가, 보고방법 등
2. 군사학 연구 및 관심제고를 위한 사회적 확산 조장 및 군사학 연구에 따른 국제적 협력체제 추진
3. 국방부 및 육군과 군부대, 그리고 군 관련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전략전술, 군사학 관련교재 개발과 각종 현안에 대한 용역 추진
4. 기타 군사학 및 육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추진
5. 기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연구소는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연구소에는 소장, 간사, 운영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경운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교수) ①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교육·연구 업무에 전념하며, 외부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은 경운대학교 재직자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저명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소 업무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조교)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세부과제책임자 및 경운대학교의 관련자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사학의 교육체계에 관한 사항
4. 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추진 사항
5. 예산과 결산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6.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 참여기관출연금, 교내지원금, 연구보조금(연구용역 간접비 포함),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용역)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18조(예산·결산) 연구소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0조(보고)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경운대학교에 귀속된다.

제5장 보 칙

제22조(해산)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